

상표출원공고와 권리

상표가 출원공고되면 출원인은 어떠한 권리가 생기게 되는가?

상표의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출원내용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공중의 의견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공중심사제도이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공고는 공고가 된 때부터 가보호의 권리가 발생하지

만 상표의 공고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상표로서 권리설정 등록을 하여야만 그 등록일로부터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특허·실용신안의 공고가 기술적 창작을 공개하는 댓가임에 비추어 상표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 작성 및 절차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요령 및 절차를 알고 싶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절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거절이유통지서에는 거절이유와 해당 법률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원한 내용중 어떤 부분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지된 거절이유가 승복할 수 없

는 것이면 잘못된 점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거절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도록 출원내용을 보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거절이유를 보정서에서 어떻게 해소시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거절이유에 따라서는 출원분할, 변경출원 등의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정서 작성시에는 최초 출원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거절이유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의 것이라도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 등은 보정할 수가 있다.

의견서 기재순서는 먼저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의 요지를 쓰고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요망사항이나 후후 조치계획 등을 쓰되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절차

출원상표의 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다.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는 출원일자 순위에 따르고 있으며 우선권주장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 출원을 위한 심사를 착수하게 되며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 심사관이 심사를 한 결과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며

•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간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후에 이의결정을 하게

된다.

•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의견이 거절이유를 반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거절사정을 한다.

• 출원공고한 상표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을 한다.

• 거절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는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설정일로부터 권리가 발생된다.